[서식 예] 이혼청구의 소(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)



소 장

원 고 ㅇ ㅇ ㅇ (李ㅇㅇ)

(19○○년 ○월 ○일생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(19○○년 ○월 ○일생)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이혼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- 2.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와 피고는 19○○. ○. ○. 혼인하여 19○○. ○. ○.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입니다.
- 2. 피고는 결혼초부터 전문직업을 가진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원고가 결혼 지참금

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원고를 구타 폭⁸ 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등 부리는 등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.

3. 따라서 피고의 원고 및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른 실정이며,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'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' 및 같은 조 제4호의 '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'에 해당하므로, 원고는 피고와 이혼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○○○원을 구하기 위하여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1.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1.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20 O O 년 O 일 O 의 의 원고 O O O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※ 아래(2)참조
제출부수	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		
이혼사유	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		

※(1) 제 출 법 원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
※(2) 제 척 기 간

- 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: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
- 2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: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